복강경DRG수술시 수술방법CHANGE

Q.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 중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에 <mark>개복술로 전환</mark>하여 수술을 종결한 경우 "복강경 등 내시경하

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등은 각각의 해당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며, 본인부담률이 5%인 경우에는 239,000의 5%에 해당하는 금액인 11,950원을 본인이 부담함 ☞ 「국민건강보

험법시행령 - 별표2 제3호에 해당하는 대상자인 경우에는 그 각목에서 정한 본인부담률을 적용

수술시 보상하는 239,000원의 금액을 추가 산정함. 이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 적용 방법은?